

교육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

- 1. 관련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12925(2022.3.18.)
- 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1일 6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확산되며위중증, 사망자가 함께 증가하고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,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며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<주요 조치 사항>

구분	내용(변경사항)
사적모임 제한	? (현행) 7인 이상 금지→ (변경) <u>9인 이상 금지</u>

- ※ 그 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는 현행 유지
- 3. 각 기관(부서)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**내부 확진자 급증 상황에 신속히 대응함**과 동시에 방역실태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자체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. 행사는 지속적으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가. 적용기간:2022.3.21.(월) 0시 ~ 2022.4.3.(일) 24시
- 나. 적용지역:**전국 17개 시?도***
 - *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. 제주특별자치도
- 다. 경과규정
-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9813(2022.3.4.)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2022.3.21.(월) 05시까지 유효
- ② 2022.3.21.부터 이어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**2022.4.4.(월) 05시까** 지 적용
- 1)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

○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(30종) 및 종교시설

- ?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?무도 장), 노래(코인)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경륜?경정?경마/카지노(내국인)
- ? 식당?카페, 멀티방(오락실 제외), PC방, (실내)스포츠경기(관람)장, 파티룸, 마사지업소?안마소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유원시설(놀이공원?워터파크), 오락실, (실외)스포츠경기(관람)장, 실외체육시설, 숙박시설, 키즈카페, 돌잔치, 전시회?박람회, 이?미용업, 국제회의?학술행사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, 학원 등, 독서실?스터디카페, 영화관?공연장, 박물관?미술관?과학관, 도서관, 상점?마트?백화점, 종교시설
- 고위험 사업장(2종): 콜센터, 물류센터
- **법적근거**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 각호
-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1: 전국다중이용시설 등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

2) 모임?행사

- **법적근거**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 각호
-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 - ?(사적모임)전국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

?(사적모임 외 모임?행사)

- (~299명)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?행사 가능
- (300명 이상)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,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(지역)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?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
 - ? 단,<u>2021.12.16. 0시 이전</u>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,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?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(예외 인정범위 강화 가능)
- ※실내?외 체육시설에서 경기(시합) 시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까지 가능(사적모임 예외)
- ?(시험) 수험생 간 1.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, 대기자 공간 마련, 시험관계자.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
- * 기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

붙임2: 전국 모임?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3) 교통시설

- 대상시설: 대중교통시설(국제항공편 제외)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 각호
-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- 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20199(2021.6.28.)에 의한 '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' 계속 적용

4) 국공립시설

○ 소관부처?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※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(이용)특성, 방역관리 상황, 민 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, 국공립시설(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) 탄력적 운영가능

5) 사회복지시설

○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

6) 사업장

○ 유연근무(재택근무, 시차출퇴근 등) 적극 활용,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,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

7) 학교(등교)

- 등교 등 관련 사항은 교육부 안내에 따름
- 4.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,
 - 각 기관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,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붙임 1.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 - 2.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 - 3.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. 끝.



수신자 각실과, 고등교육기관전체, 소속기관, 소속단체,

주무관 **강진아** 행정사무관 **김은미** 학생건강정책과 전결 03/22 장 **정희권**

협조자

시행 학생건강정책과-2486 (2022. 3. 22.) 접수 인성건강과-4894 (2022. 3. 22.)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교육부 14동 (어진동) / www.moe.go.kr

전화 044-203-6962 /전송 044-203-6438 /jinariver@korea.kr / 공개